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1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 26.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 27.

다. 상정일자: 2022. 2. 9.

(제264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성동구청장

나. 제안이유

2022. 1. 13. 字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후생복지제도 독립으로, 우리 구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후생복지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 정의 및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의회 후생복지 제도의 안정적인 확립을 위한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회 의장 협의규정 신설(안 제13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나. 협조부서: 총무과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라. 입법예고: 2021. 12. 16. ~ 2022. 1. 5.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가. 제안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2022. 1. 13.字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후생복지제도 독립으로, 우리 구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후생복지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2조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에서 ‘구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상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맞춰 용어를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고
- 안 제8조에서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정비함
- 안 제13조에서 독립된 구의회 후생복지 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 협의하여 각 기관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복무·후생복지 등이 독립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의 ‘구 소속 공무원’ 정의에서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삭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